이 보도자료는 2025. 5. 9.(금) 10:3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u>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u>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5. 5. 9.(금)

제 목

美 법무부와의 MOU를 기반으로 공조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 혐의사실, 불기소이유, 제7조 각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시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시건을 美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하여.
 - '19. 1.~'23. 11. 美 육군공병대(USACE), 美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229회, 약 1,750만 달러(255억 원) 규모]을 적발**하고,
 - 발주처인 美 국방조달본부(DLA)와의 물품 조달계약에 따라 하도급 용역 **입찰을 시행한 민간 물류업체(美 법인)**가 하도급업체들 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한 후,
 -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입찰을 시행한 美 법인은 공정거래법위반죄로, 위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은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각 불구속 기소함
- 본건은 韓 검찰 美 법무부 반독점국 간 반독점 형사집행 MOU에 기반한 美 법무부의 자료 이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韓·美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韓·美 양국 수사팀이 여러 차례의 **화상 및 대면 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사 단서 및 관련 증거**를 제공받아 범행의 전모를 밝혔음
- 검찰은 향후에도 韓·美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음

피고인

- 하도급업체(법인 1개, 개인 9명)
 - (법인) A업체(국내 법인)
 - (개인) 가○○, 나○○(A업체 회장 및 대표), 다○○, 라○○(B업체 사내이사 및 대표), 마○○(C·D·E 업체 운영), 바○○(F·G업체 운영), 사○○(H업체 운영), 아○○(I·J업체 입찰담당자), 자○○(K업체 운영)
- 입찰시행사(법인 1개, 개인 3명)
 - (법인) L법인(미국 법인)
 - (개인) 차○○, 카○○, 타○○(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3명)
 - ※ 피고인별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Ⅱ 공소사실 요지

- 1. 하도급업체들의 입찰담합 범행
 - 가. 美 육군공병대(USACE) 발주 입찰
 - <u>가ㅇㅇ, 나ㅇㅇ(A업체 회장 및 대표), 다ㅇㅇ, 라ㅇㅇ(B업체 이사 및 대표), 자ㅇㅇ(K업체 운영)</u>는 공모하여, '19. 1.~'21. 3.경 美 육군공병대 (USACE)에서 발주하여 X법인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한 <u>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134건(한화 약 80억 원)의 입찰</u>에서 B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A업체, K업체는 B업체를 위하여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해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 <u>A업체</u>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가○○, 나○○가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美 국방조달본부(DLA) 발주 입찰

- 가○○, 나○○(A업체 회장 및 대표), 다○○, 라○○(B업체 이사 및 대표), 마○○(C·D·E 업체 운영), 바○○(F·G업체 운영), 사○○(H업체 운영), 아○○(I·J업체 입찰 담당자)는 공모하여, '19. 1.~'23. 11.경 美 국방조달 본부(DLA)에서 발주하여 L법인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한 <u>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95건(한화 약 175억 원)의 입찰</u>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해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 <u>A업체</u>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가○○, 나○○가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 입찰시행사 L법인 및 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범행

가. L법인 및 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입찰담합 가담

-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인 차○○, 카○○, 타○○는 가○○, 나○○ (A업체 회장 및 대표) 등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하여, '19. 2.~'21. 3.경 美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총 13건에 대해 A업체 낙찰을 위해 A 및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해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 <u>L법인</u>은 사용인인 위 직원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타〇〇의 입찰방해

- L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타○○는 '22. 4.~12.경 美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A업체가 낙찰받거나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업체의 견적금액을 조정함 [입찰방해]
 - ※ 피고인별 상세 가담 내역은 [별지] 참조

Ⅲ 수사 경과

① 한국 측 수사 경과

● '24. 6. 韓·美 법무부, 韓 대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간담회

○ '24. 8.대검, 수사첩보 송부(美 법무부의 수사 검토 요청)

● '24. 11. <u>1차 압수·수색(A업체 사무실 등 총 4곳)</u>

● '25. 2.~3. **2**차 압수·수색(L법인 한국사무소 등 총 9곳)

● '25. 2.~4. 사건관계인 등 40여 명 조사

● '25. 4. 23.~24. 美 **법무부 출장 회의**(최종 처분범위 및 내용 협의)

● '25. 4. 23.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법인 2개 포함 총 14명)

○ '25. 5. 9.
 하도급업체(법인 1곳, 개인 9명) 및 입찰시행사(법인 1곳, 직원 3명) 불구속 기소(총 14명)

② 미국 측 수사 경과

● '22. 3. 16. <u>B업체 대표 등 2명(い○○</u>, 라○○), 美 텍사스서부

법원에 美 셔먼법 제1조 거래방해 공모죄(Conspiracy

to Restrain Trade) 등으로 <u>기소</u>(現 재판 계속 중)

● '23. 9. 12. <u>B업체</u> 텍사스서부법원 <u>유죄 판결 선고</u>

-'23. 4. 25.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된 후 유죄 인정(Guilty Plea)하여, 벌금 500만 달러, 형사손해배상 360만 달러 선고

○ '24. 3. 5.A업체 및 대표(나○○), 텍사스서부법원에 美 셔먼

법 제1조 거래방해 공모(Conspiracy to Restrain

Trade) 등으로 <u>병합 기소</u>(現 재판 계속 중)

● '25. 4. 1. <u>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 X법인 前</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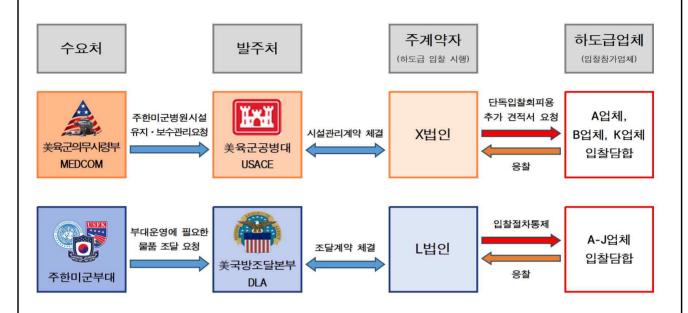
직원 파○○, 텍사스서부법원에서 기록훼손죄(Destruction

of Records) 유죄 인정(Guilty Plea)

I۷

범행 구조와 수법

① 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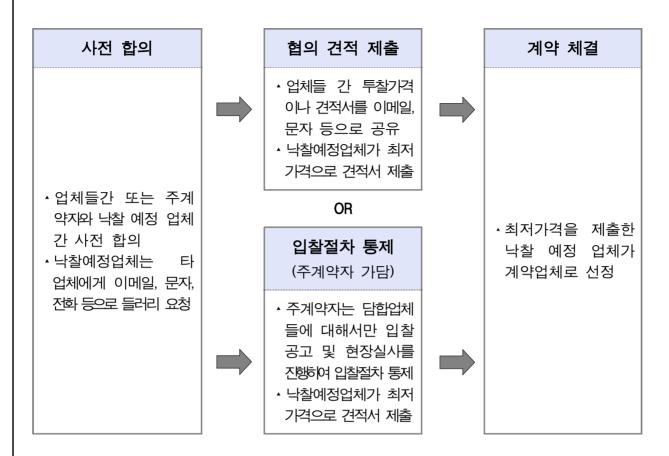


- ▶ 육군공병대(USACE)는 육군의무사령부(MEDCOM)에서 의뢰하는 주한미군 각 기지 내 병원 시설에 대한 전기 배선 교체, 건물 벽·바닥 공사 등 유지 보수 용역을 발주하고, 주계약자인 X법인은 위 용역을 수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시행
- ▶ 국방조달본부(DLA)는 주한미군 각 기지에서 의뢰하는 물품 조달 및 이에 부수되는 설치 용역을 발주(LED, CCTV 등 조달 및 설치 등 포함)하고, 주계약자인 L법인은 위 물품 조달 및 용역을 수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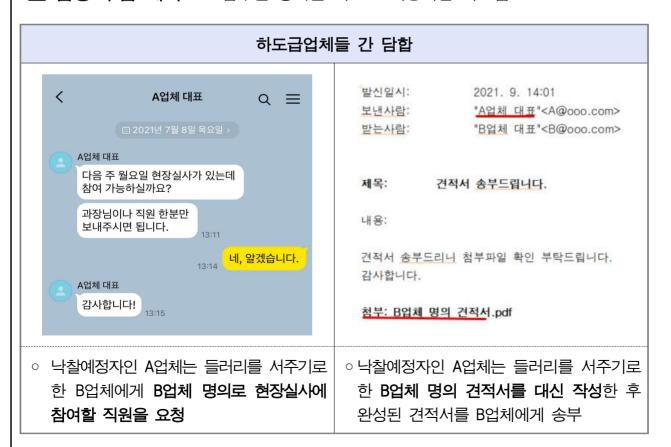
② 입찰 주요 절차 흐름도

입찰공고 현장실사 개최 겨적서 투찰 (주계약자) (주계약자) (하도급업체) ▲ 입찰을 원하는 업체 ▲ 투찰금액 산정 후 ▲ 자체 입찰시스템 또는 들을 대상으로 공사 이메일로 업체들에게 주계약자에게 겨적서 현장을 설명한 후 현장실사 일정 등 안내 제출 견적서 제출 요청 발주처 승인 낙찰업체 가선정 계약 체결 (발주처) (주계약자) ▲ 사용자 최종 확인 후 ▲주계약자가 제출한 ▲ 최저가격 등 업체를 투찰금액 등 검토 낙찰받은 업체에서 낙찰자로 가선정 용역 제공 하여 승인 여부 결정

③ 입찰담합 범행 구조



[4] **범행 수법 예시** ※ 압수된 증거를 기초로 재정리한 자료임



하도급업체들 간 담합

발신일시: 2020. 2. 19. (수) 오전 9:28 "B업체 대표" <BB@ooo.com> 보낸사람: "K업체 대표" < KK@ooo.com> 받는사람:

제목: 내용:

K업체 사장님.

아래 내용 그대로 복사하시되

제일 아래에 있는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업체등록 서류입니다.

사장님 회사 이름으로 써서 보내세요.

업체등록은 사장님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야 해서 번거롭지만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K법인 업체등록 서류

○ 낙찰예정자인 **B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K업체 대표에게 X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업체 등록을 요청**

발신일시: 2020. 6. 4. (수) 오후 6:57 "B업체 대표" <BB@ooo.com> 보낸사람: 받는사람: "K업체 대표" < KK@ooo.com>

제목: 수정 견적서입니다.

내용:

K업체 사장님.

SO-1234&5678호의 수정 견적서를 첨부하오니 이것을 X 법인 담당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K법인 명의 견적서 1, K법인 명의 견적서 2

○ 낙찰예정자인 **B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K업체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한 후 완성된 견적서를 B업체에게 송부하면서 입찰시행시인 X법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

하도급업체들 가 담합

H업체 대표 < $a \equiv$ 사장님, H업체 명의 견적서 오전에 발송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입찰 건 현장실사에 H업체도 참석한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저희 A 업체 쪽에서 보내겠습니다. 14:56 H업체 대표 알겠어요. 시행사 측에 우리 H업체도 참석한다고 말해놨으니, 사람은 A 업체에서 대신 보내세요.

○ 낙찰예정자인 A업체 대표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H업체 대표에게 H업체 명의로 현장 실사 참여를 요청



○ H업체 대표는 참석 신청을 해두었으니 현장실사에는 A업체 직원을 H업체 직원인 것처럼 대신 참석시키라고 답변



○ A업체 대표는 H업체 대신 현장실사를 참여한 것에 나아가 **H업체 명의 견적서**도 직접 수정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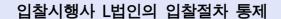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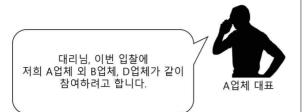
H업체 대표

예, 그렇게 하세요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번 입찰 건 수량이 변경되었다고 견적을 다시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H업체 견적서도





발신일시: 2021. 7. 9. 12:48

보낸사람: "입찰시행자 L법인 실무담당자" <<u>LL@ooo.com</u>>

받는사람: "DLA 담당자"<<u>DLA@ooo.com</u>> 참조: "L업체 부장"<<u>LA@ooo.com</u>> "L업체 부지사장"<LB@ooo.com>

제목: 현장 실사 일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 캠프 캐롤 빌딩 000호

시간: 오후 1시 날자: 2021, 7, 12.

참석자: A업체, B업체, D업체

감사합니다.



○ 낙찰예정업체인 **A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입찰시행사 L법인에게 알려줌 ○ 입찰시행사 L법인의 실무자는 A업체가 알려준 업체에 한정하여 현장실사 실시 → A, B, D 업체 중 최저기격 제출한 A업체 나찰

V

수사 의의

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 사안 관련 다수의 입찰담합 범행 규명

- 본건 범행은 美 육군공병대(USACE) 및 美 국방조달본부(DLA) 등 미군 산하기관이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을 위해 주관하는 하도급 용역 입찰절차에서 韓·美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주한 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안인바,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범죄 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 ▶ 국내 주둔하는 <u>주한미군</u>은 약 2만 8,500명 상당('25. 기준)으로 이는 독일, 일본에 이어 <u>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u>이며, 주한미군 본사인 캠프 험프리스(경기도 평택 소재)는 단일기지로 <u>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육군 기지</u>임(면적 14.67㎢, 평시최대 4만 3,000명까지 수용 가능)

● 검찰은 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에 대한 일부 담합 범행(7건)을 수사 단서로 총 11개 입찰참여업체들 간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평택), 캐롤(왜관), 케이시·호비(동두천), 조지·워커·헨리(대구),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한화 약 255억 원)의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함

② 입찰시행자인 L법인의 부당 공동행위 엄단

- 나아가, 美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하도급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본건 담합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하도급업체들 뿐만 아니라 입찰시행사
 L법인(미국 법인)도 가담한 조직적·구조적 범행임을 밝혀냄
 - 입찰시행업체인 L법인은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업체들의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해주었음
 - 물품 조달 등 용역 제공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 사용자가 특정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입찰시행업체는 그 사용자의 뜻에 맞춰 입찰절차를 진행해줌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자 측과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었음
- 또한, 입찰시행사 L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그 업체의 투찰금액을 조정하여 입찰방해한 사실도 규명함
- 최종적으로, 담합 및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미국 국적 1명) 및 L법인을 모두 불구속 기소함
- ▶ <u>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u>, USACE가 발주하는 하도급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그 시행업체인 <u>X법인(미국 법인)의 담당 직원 파○○(미국 국적)이 단독입찰의</u> 경우 발주처에게 경쟁입찰이 없었음에도 그 단독 투찰가격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단독 입찰참여자인 B업체 측에게 A업체의 추가 입찰 견적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u>담합을 종용한 휴대폰 메시지 및 진술 등을 확보</u>하여 美 법무부에 송부함

③ 韓·美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른 최초 공조 수사

- 본건은 '20. 11. 18. 체결된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美 법무부 측의 수사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아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 사건임
 - * 韓 검찰 및 美 법무부는 '20. 11. 18. 국제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그 주된 내용에 양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 협력(인적 교류·훈련) 등이 포함
 - 美 법무부는 본건 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개인 3명 (나ㅇㅇ, 다ㅇㅇ, 라ㅇㅇ) 및 법인 2곳(A업체, B업체)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韓 대검에 이첩하여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함

美 법무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Contractors Indicted for Rigging Bids on Subcontract Work and Defrauding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Thursday, March 17, 2022

Office of Public Affairs

A federal grand jury in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returned an indictment charging two South Korean nationals for their roles in a conspiracy to restrain trade and a scheme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in connection with operation and maintenance work for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indictment, Hyun Ki Shin and Hyuk Jin Kwon were officers of a South Korean construction company that performed subcontract work on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n. Kwon was also a part owner of the company. Beginning at least as early as November 2018, Kwon and Shin, along with others, conspired to rig bids and fix prices for subcontract work, and defraude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order to obtain millions of dollars in repair and maintenance subcontract work at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Bid rigging, price fixing and fraud are crimes," said Assistant Attorney General Jonathan Kanter of the 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Division. "We will not stand by as criminals engage in illegal conduct to harm our military installations overseas."

"By allegedly rigging bids with their competitors, the defendants cheated to obtain U.S. Army-funded repair and construction subcontracts," said Special Agent-in-Charge Ray Park of the U.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s (Army CID) Major Procurement Fraud Field Office-Pacific, "U.S Army CID Special Agents remain on guard to investigate and hold individuals accountable who corrupt the integrity of the Army's procurement process." PRESS RELEASE

Additional Contractors Indicted for Rigging Bids and Defrauding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Wednesday, March 6, 2024

Office of Public Affairs

A federal grand jury in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returned a superseding indictment today charging a third South Korean national and a South Korean company for their roles in a bid-rigging conspiracy and a scheme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in connection with operation and maintenance work for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superseding indictment filed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Hye Yeon "Rachel" Jo was the CEO of DESCA Co. Ltd. (DESCA) a company that performed subcontract work on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Beginning at least as early as November 2018, Jo and DESCA, along with others, conspired to rig bids and fix prices for subcontract work, and defraude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o obtain millions of dollars in repair and maintenance subcontract work at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Hyuk Jin Kwon and Hyun Ki Shin, who conspired with Jo and DESCA, were previously indicted on similar charges on March 16, 2022.

"These alleged crimes targeted United States military installations overseas, where we make significant investments to protect our strategic interests," said Director Daniel Glad of the Justice Department's 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 (PCSF). "The Antitrust Division and our PCSF partners around the glob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pursue charges for illegal conduct that targets U.S. military spending, wherever it occurs."

"Fair and open competition is crucial to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taxpayer," said Special Agent in Charge Stanley A. Newell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 본건은 범행 구조상 한국과 미국 양국에 증거가 산재되어 있어,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없이는 명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었음
- '발주를 의뢰한 사용자 및 발주자'는 미군 또는 미국 기관, '입찰시행자 내지 주계약자'는 미국 법인이나, 실제 입찰절차를 관리한 '입찰시행자 측 직원'들은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한 한국·미국 사람들이고, 입찰에 참가하고 용역을 수행한 '하도급업체' 또한 한국 업체들임

- 韓·美 수사팀*은 병행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메일, 화상회의(4회)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관련 증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MLAT)를 통해 공유하여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고 실체관계를 규명함
- ▶ (한국 수시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4명), 대검 반부패부 및 국제협력담당실(2명), (미국 수사팀) 美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 형사부(Criminal Section) 검사 2명 등
- 美 수사팀은 미국 내 소재한 X법인 및 L법인 본사 관련자 진술 및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韓 수사팀은 한국 내 소재한 하도급업체 및 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진술과 포렌식 내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함
- 특히, 韓 수사팀은 美 법무부 반독점국 및 DCIS, CID*를 통해 미군 관련자(MEDCOM 담당자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검찰 소환 조사함
- * DCIS(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美 국방부 산하 감찰관실 소속 수사기관), CID(The U.S. Army Criminal Investigative Division, 美 육군 내 수사국)
- 최종 처분 전 韓·美 수사팀은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범행 가담한 美법인 및 美군무원 처분 등)을 협의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 수사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



美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 형사부・국제부 검사 및 한국 수사팀

VI 향후 계획

 • 향후에도 韓·美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별첨 1]

【피고인】

순번	피고인	지위		담합 건수			+1 🗆
				USACE 발주	DLA 발주	합계	처분
1	7100	A 업체 회장	A업체 대리인	134	95	229	불구속 기소
2	400	A 업체 대표	A업체 대리인	134	95	229	불구속 기소
3	- HOO	B 업체* 前 사내이사	B업체 대리인	134	31	165	불구속 기소
4	라	B 업체 前 대표이사	B업체 대리인	134	31	165	불구속 기소
5	□ (00	CDE 업체 운영자	개인사업자(C) 법인(DE) 대리인	-	60	60	불구속 기소
6	чЮО	FG 업체 운영자 (미국 국적)	각 개인사업자	-	34	34	불구속 기소
7	₩	H 업체 운영자	개인사업자	-	14	14	불구속 기소
8	%	IJ 업체 입찰 담당자	각 법인 대리인	_	12	12	불구속 기소
9	짜	K 업체 운영자	개인사업자	34	-	34	불구속 기소
10	*100	L 법인 실무담당자	사용인	-	13	13	불구속 기소
11	₹	L 법인 前 부장	사용인	_	7	7	불구속 기소
12	EIOO	L 법인 자사 책임자 (미국 국적)	사용인	_	6	6	불구속 기소
13	A업체	하도급업체	법인	134	95	229	불구속 기소
14	L법인	입찰시행 법인 (미국 법인)	법인	-	13	13	불구속 기소

^{*} A업체, B업체, D업체, E업체, I업체, J업체, L법인은 '법인', 그 외 업체들은 '개인사업자'이며, B업체는 2024. 6. 27.경 법인 해산, 법인 D는 2024. 12. 2. 해산 간주되었음